

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윤건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22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2.

발 의 자 : 윤건영 · 양부남 · 신정훈
윤준병 · 한준호 · 차지호
이광희 · 김문수 · 정태호
김성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,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됨.

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4조 등).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“광역시”를 “통합특별시·광역시”로, “도”를 “특별자치시·도”로 한다.

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광역시장”을 “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시·도비 기준보조율) ①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, 경비의 종목,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,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「지방재정법」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.	제4조(시·도비 기준보조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통합특별 시·광역시--특별자치시·도-- -----.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) ① · ② (생략)	제11조(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·군·자치구의 장(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시·도의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적은 서류를 특별시장·<u>광역시</u> <u>장</u>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 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 사”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략) ④ · ⑤ (생략)	-----<u>통합특</u> <u>별시장·광역시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--	---

